

이형숙. 2019. “전환기정의 과정에서의 군(軍) 직업주의와 부인(denialism)”
『인권연구』 2(1): 109-143.

Lee, Hyung Sook. 2019. “The Military's Denialism to Clean Up the Past and Professionalism”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1): 109-143.

[일반논문]

전환기정의 과정에서의 군(軍) 직업주의와 부인(denialism)

이 형 숙*

한글초록

이 연구는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군이 민주화 이행기에 이를 부인하는 관행에 대하여 군 직업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군 직업주의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군 직업주의는 군부의 정치권력 장악 과정과 ‘병영으로 복귀’ 이후 군 집단 행위 분석이론으로 유효한 측면이 있다. 군은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 ‘완벽한 군인관에 의한 우월주의’, 폐쇄적 구조로 인한 ‘배타적 숙련성’, 과거 국가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의 확장성’의 직업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세 가지 군 직업주의적 특성을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안보 중심의 분단국가이다. 안보의 중요성은 국가기구들 가운데 군의 중요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군 직업주의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점차 군이 이해 집단화하는 조합주의적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

군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조합주의적 직업주의 대안으로 군 조직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개입, 과거 군 관련 국가범죄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독일 연방군에서 제시되는 ‘내적지휘’ 즉 ‘복종의 원칙’ 도입이 제시될 수 있다.

주제어: 부인, 군 직업주의, 전환기정의, 의문사, 위력기구

*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분석을 위한 이론 고찰
- III. 군 직업주의와 부인 사례분석
- IV. 결론

I. 들어가며

‘보호자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플라톤의 이 물음은 군(軍)에 대한 통제 즉 정치에 관여하고자 하는 군대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군(軍)은 전쟁 등의 위기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도 폭력을 직업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구이다. 군대라는 공간은 인간 내면의 잠재적 폭력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폐쇄된 공간으로서, 사회적으로는 필요악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근대 이전의 군대는 왕이나 제후 등 권력자의 집권 수단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쟁의 성격이 시민 참여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군대의 권한과 역할은 국민국가의 안전과 정치체제를 지키는 역할로 변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1945년 미군정청령에 의해 ‘조선 경비대’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한국군 창군 모체가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군대는 근대적 기술 교육을 통한 국민 계몽과 취약한 사회기반 시설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도 군은 자연재해나 국가 재난 시 우선 순위로 동원되어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은 국가 폭력의 가해 주체로서 인식되어온 측면이 있다. 여·순사건, 제주 4·3 등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군부독재 정권시기에는 각종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통해 학생운동을 탄압하였으며, 1980년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집단 살상하는 국가범죄를 저질렀다. 1961년 5·16과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군관계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문민에 의한 군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자신들이 통치 과정에서 저지른 과거의 반인권적 행위들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방관을 통해 부인하고 있다.

한국의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은 군, 경찰청, 정보기관, 검찰 외에도 사법부까지 정권 유지 수단으로 동원하였다. 위력기관들 중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은 전환기정의(김현준, 2017: 102에서 재인용)¹⁾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거 반인권 행위 일부분을 조사하는 특별 기구를 만들었다²⁾. 이들 조사특별기구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2-3년 동안 각 기관별로 주요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들 특별조사 기구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2005년 12월 출범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포괄적 조사범위에 자신들의 과거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1) Titel(2003)의 개념을 가져온 김현준에 따르면 “과거의 억압적 정권이 행한 만행에 대응하기 위해 일어난 다양한 정치과정”으로 전환기정의를 개념화하였다. 또한 만행(atrocities)을 “군사독재, 권위주의, 파시즘 등 폭압적 정권의 군인, 경찰, 검찰, 혹은 정보기관원에 의해 행해진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의미하고 주로 초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s), 자의적 구금, 고문, 실종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김현준, 2017).

2) 특별기구들의 활동 기간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11월-2007년 11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4년 11월-2007년 11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5월 2007년 12월까지이다.

아닌지 의심하였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³⁾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군은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미도사건, 5.17과 5.18 등 8건을 조사 하였다. 끊임없이 제기되던 군 의문사는 2006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보다 앞서서 군대 내 의문사에 대해 법제화 여론이 조성되던 1999년에는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군대 내 일부 사망사건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군의 사실조사들은 면피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⁴⁾.

이 연구가 위력기관 중 특별히 군(軍)⁵⁾의 전환기정의 과정의 부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 때문이다. 첫째, 군은 다른 위력기관에 비해 ‘조직의 우월성, 상징적 지위, 무기의 독점(S. E. 화이너, 1989: 13)’ 등 우월한 이점을 가지고 두 번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는 규모가 매우 상당하였다. 이에 비해 전환기정의 과정의 군의 조치들은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2007년 조사한바 있는 1980년 광주

3) 진실화해위원회 법 시행령 13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 조정)에는 조사대상 선정, 조사 중인 사건 중복에 대한 조정, 사회적 문제, 추가 검증절차에 대한 관한 사항을 특별 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당해 특별기구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4) 2005년 7월 26일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 과거사와 관련, 국민들이 과거의 기준으로 군을 바라보고 있어 현재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들의 노력으로 투명하게 해결해야 후배들에게 되물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9)

5) 직업주의 분석 대상이 되는 군은 부사관급과 징병제에 의해 복무 대상이 되는 일반 사병을 제외한 정규 간부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국방부 군 장교들로서 군 간부, 직업군인, 군부 등의 명칭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한다.

시민들에 대한 집단 학살의 진실에 대하여 현재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진정한 반성에는 반인권적 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군은 군 사법제도 개혁 등 기본적인 군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집단 이해관계로 접근하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직전 정부에서 군 기무사령부는 국내 정치 개입을 통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반인권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는 지속적 부인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전환기정의를 활용하는 군에 대해서는 문민의 일상적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넷째, 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군은 다른 위력기구들에 비해 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전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군의 전환기정의 과정의 부인을 연구하기 위한 사례로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다루고자 한다. 이 사건은 1984년 4월 2일 허원근 일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군 또는 외부의 사실 조사과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2002년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고 허원근 일병이 자살하였다고 ‘공식 부인’하였다⁶⁾. 군대 내에서 사망한 군인의 죽음에 대한 사실 부인이 전환기정의 과정에서 군 전문직업적 특성과 결합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분석을 위한 이론 고찰

1. 부인(denialism) 이론

(1) 부인(denialism)의 개념

‘부인(denial)’은 ‘어떤 주장된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⁷⁾’ 것이

6) 국방부의 발표 이후 2010년 서울지방법원은 고 허원근 일병이 타살되었다고 선고하였다.

다. 사실에 대한 주장인 부인은 참 또는 거짓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부인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denialism’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denialism’은 ‘부인’, ‘부인주의’, ‘부인경향’ 또는 ‘부인 관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⁸⁾⁹⁾. 부인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포함하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Diethelm and Mckee, 2009: 2)’로 주장하는 담론과 행위들을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denialism(부인 또는 부인주의)’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역사가 헨리 루소(Henry Rousso)가 『Vichy Syndrome』에서 처음 사용하였다(Fronza, 2018: 12). 루소는 부인주의 개념을 부정주의와 함께 홀로코스트 가스실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과 관련하여 특별히 사용하였다.

부인은 진실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행위를 일컫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인은 합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시장주의와 결합되기도 하고, 반 과학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배경을 가지고 ‘진실 주장을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부인이라 할 때, 국가기구의 진실에 대한 부인은 이데올로기를 포함하게 된다.

코언(2009)은 부인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 ‘현실에서 생겨난 죄책감, 불안 또는 심란한 감정에 대응하는 무의식적 방어기제’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라 지적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적 방어기제, 자아분할, 인지역설, 자기기만, 부정직, 추론구도 등의 구성물”이 내면

7) <https://ko.wiktionary.org> 2019년 2월 1일 검색 인용

8) 스탠리 코언,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번역을 통해 부인을 소개한 조효제 교수의 비공식적 지적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9) 이 글에서는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denial’ 보다 집단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담아 주로 사용되고 있는 ‘denialism’을 사용하고, ‘부인’, ‘부인주의’, ‘부인 관행’, ‘부인경향’으로 문맥에 따라 표기를 달리하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에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스탠리 코언, 2009[2001]: 53).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서의 부인을 집단과 사회의식으로 확대해 보면 ‘진실에 대한 부정’인 부인은 거짓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조직의 적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인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일 때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인지’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인지하고 있음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표현 방식이 부인이다.

(2) 부인의 유형

최근 부인주의는 역사적 범위를 넘어서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⁰⁾. 역사적 부인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주의(negationism)’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인행태(denialism)는 나치 청산을 위해 열렸던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에서 나치에 가담했던 범죄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한 변론 과정에서 주장되었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인행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감(이소영, 2013: 412)”을 가진 사람들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에 개입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홀로코스트 부인행태에 대한 규제법을 제정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집단적 살인,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를 담고 있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인행태가 지속된다면, 역사적 사실로서 확정 받지 못한 과거의 수많은 반인권 행위들은 더욱 구조적으로 부인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김동춘(2013)은 분단국가인 한국의 역사적 부인에 대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부인을 지적하고 있다(김동춘, 2013: 119).

10) 최근에는 Denialism과 다른 Post-Denialism이 나타나고 있다. Post-Denialism은 무정부적인 입장(Keith, 2018)을 가지고, 이미 확립된 진실의 부인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Post-Denialism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 욕구 표출이 쉬워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부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정 여부의 환경영역과, 흡연의 유해성 문제에 대한 공중 보건 영역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 되고 있다 (김명희, 2017; Diethelm and Mckee, 2009: 3¹¹⁾). 부인 연구자들은 일부 ‘사이비’ 연구자, 세계적인 석유회사, 담배 회사 및 이들과 결탁한 정부 관료들을 부인주의자(denialist)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부인 관행에 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간접 흡연의 유해성을 주장하는 의사들은 부인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기후변화가 실재하고 있는데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조차 축소, 외면하는 부인이 지속되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전 지구적 대책 마련이 늦춰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하여 담배 회사들에 불리한 연구들을 축소하고 감추는 행위 즉 부인을 저지르며 담배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Diethelm and Mckee, 2009: 3).

Hoofnagle(2010)은 부인주의가 이데올로기와 실재 사이의 논쟁이라 지적하고 있다. 부인주의의 특징은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부인과 부인주의자들의 움직임은 서로 매우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Hoofnagle M, 2010).

Diethelm and Mckee(2009)는 부인주의자들의 특징을 정의하면서 부인주의자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Diethelm and Mckee는 부인주의를 구별할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인주의는 음모적으로 공모한다. 음모적 공모는 과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독립적 증거’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소모적으로 논쟁하게 만든다. 응용과정에서 아직 증거나 논리적 증거가 부족한 논문들을 내세워 논란을 만들고 이

11) Hoofnagle형제는 Scienceblogs.com을 통해 부인주의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를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뒷받침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날조된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특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사이비’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부인하는 논리들을 뒷받침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셋째, 진실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의 결함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넷째, 부인주의자들은 입증이 불가능한 것을 강조한다. 부인주의자들은 현상의 이해를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거짓 진술과 논리적 오류를 사용하여 부인한다(Diethelm and Mckee, 2009: 2-4).

Diethelm and Mckee의 부인주의의 정의 및 인지 방법은 코언(2009)의 일상적 부인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코언은 “고문, 담배 발암, 부정부패 보도에 대한 부인”은 “결코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인에 연루되는 사람들은 공인으로서 자신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도성을 갖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막고 차단하려는 반응’과 더불어 “사실이 들어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사전 모의”이며 “골치 아픈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욕구”에서 출발한다(Diethelm and Mckee, 2009: 2-4). 부인은 ‘악의와 상관없이(아이리스 M. 영, 2013: 144)’ 부인하는 조직과 함께 실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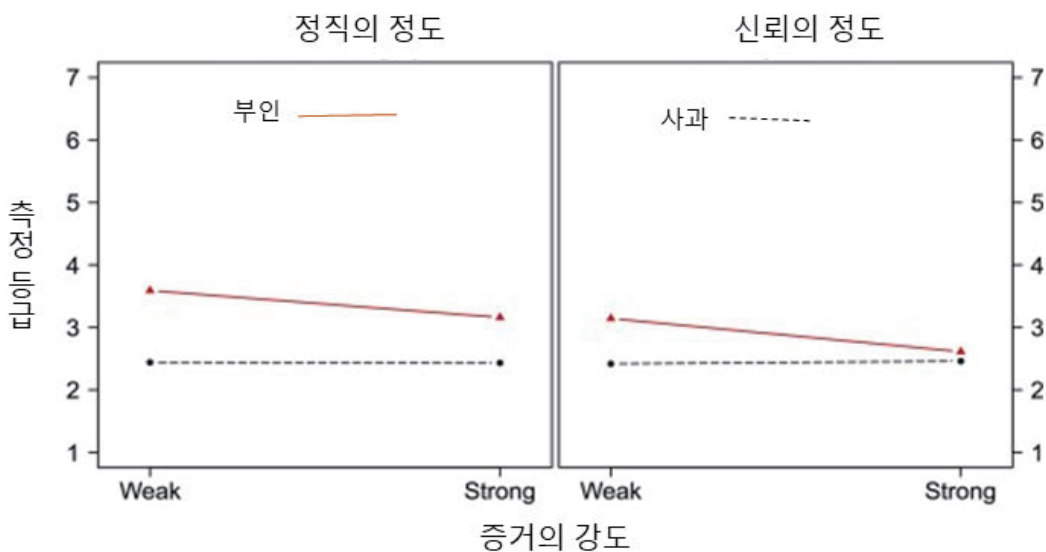
(3) 부인의 배경

부인은 조직의 신뢰가 부정되는 위기상황에서 선택되고 나타난다. 사실에 대한 개방적인 대응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방어적인 부인보다 해롭다는 연구는 ‘역설적인 효과’로 조직의 구조적 부인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Matteo, Joost and Carita, 2017: 645-660). 이러한 부인은 기소될 만큼의 윤리적인 문제가 결부된 조직 관련 범죄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Matteo, Joost, Carita(2017)는 부인이 사과보다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고자 스웨덴 룬드(Lund)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가상 실험을 하였다.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사과(apology) 등의 사실 인정이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실험에서는 오히려 부인이 기업의 신뢰 회복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래 <그림>에서 증거가 약할 때 ‘사과’가 아닌 ‘부인’ 했을 때 더욱 조직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강할 때조차 사과보다는 부인이 신뢰 회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증거의 강도 실험 조건에 의한 변화



* Matteo Fuolia 외, 2017, p.653 부분 인용

결과적으로 사실에 대해 반응하기보다 부인은 증거 정도, 입증 정도에 따라 증거 독점, 입증 책임이 없는 경우 조직 신뢰회복에 단기적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부인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결부된 범죄(기소 관련 범죄)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다(Matteo, Joost and Carita, 2017: 657).

군이나 경찰, 정보기구, 검찰 등 공안을 다루는 국가기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다. 이들 국가 기관들 중 군(軍)은 “집중화된 명령, 계서 조직, 규율, 단체정신과 독립적, 자조적 조직(S. E. 화이너, 1989: 14)”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집단적 부인은 전문 직업윤리, 조직 보위와 비밀 엄수의 전통, 상호 보호, 침묵의 원칙” 때문에 일어나고, “집단 내부의 수치스런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해 이런 집단을 둘러싼 가공의 신화가 유지” 되는 부인 관행이 지속된다(스탠리 코언, 2009: 56).

특히 계급 등의 위계질서 속에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은 무엇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기보다 모르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외면하게 된다.

군대에 길들여진다는 것은 ‘주입을 통해 정체성과 자존심의 파괴와 재 강화(허버트 허시, 2008: 162)’를 겪게 되는 과정이다. 조직 속에서 한 개인의 도덕적인 관점은 ‘권위가 바라는 기대(허버트 허시, 2008: 203)’에 잘 부응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된다. 군대라는 공간은 개인을 상황과 명령에 따라 복종과 실행에 의존하게 만든다.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의 책임자는 정치적으로 ‘부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감추는 계산된 행위’를 하게 된다. 사르트르가 언급한 ‘부정직(자기 기만)’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사르트르, 2012: 113-120; 스탠리 코언, 2009: 57).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공고화된 사회일수록 부인의 관행은 교묘하게 행해지게 된다. Diethelm and Mckee(2009)는 부인이 먼저 ‘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사건을 윤색하며,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사실을 비틀고, 언론을 통해 잘못된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면서 부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 기구에 의한 공식부인은 “관찰자들뿐 아니라 가해자 자신도 그 실상을 부인하게” 만든다(스탠리 코언, 2009: 63-69).

밀그램(Stanley Milgram)의 실험 연구는 많은 증거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범죄를 부인하는 집단 및 가해자들의 심리적 구속요인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제까지 한 모든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행동의 순차성’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들을 밀고 나가며, 이를 통해 과거행동에 대해서도 안심한다는 것이다(스탠리 밀그램, 2009: 214-219).

한국의 경우 의무복무제 과정에서 계급이 낮은 사병의 경우 의도치 않은 상황과 명령에 의해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군대 내부의 억압적 통제로 인해 ‘강제적 부인’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목격자로서의 ‘방관적 부인’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방관적 부인과 강제적 부인 상태에 놓인 부인주의자들은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시인, 방관적 개입을 통해 부인을 거부하거나, 선택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는 ‘아노미적 부인’, 강제적 부인 상태를 벗어났음에도 행동의 순차성으로 인해 부인을 지속하는 ‘기만적 부인’ 등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

2. 군(軍) 직업주의

(1) 군 직업주의 이론

직업 군인은 ‘규율이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조직’(온만금, 2014: 71; 밀즈, 1993[1956]: 196)으로 인식되어 왔다. 베블런(Thorstein Veblen)은 “전사들은 상류계급으로 분류되며 명예롭게 여겨지면서 생산 활동을 면제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토르스타인 베블런, 1899[2005]: 24).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군인의 직업주의에 대해 전문 기술성, 사회적 책임성, 집단성 또는 단결성을 제시하며 규범적 직업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군의 전문 직업주의에 의해 자유주의적 정

치 질서 유지를 위한 문민통제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Samuel. P. Huntington, 2011[1957]: 18-20).

자노위츠(Morris Janowitz)는 군 직업주의가 규범적이기 보다 전문가로서의 직업 특성을 가지며, 관리자형과 군사적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형의 직업주의가 현대 군 전문 직업주의라고 보았다(Morris Janowitz, 1971: 417-420).

브라질과 페루 군부를 비교 연구 했던 스테판(Alfred Stepan)은 대외방위 역할 중심의 헌팅턴 군 직업주의를 구 직업주의(Old Professionalism)로 비판하며, 신직업주의적(New Professionalism) 군 직업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군의 기능이 대외 방위에서 대내 안보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높아지는 등 안보 관여 범위가 점차 확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 불안정과 국가발전을 명분으로 정보기구를 통한 국내 정치개입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알프레드 스테판, 1985: 163-185¹²⁾). 스테판의 연구는 브라질과 페루 군부 등 라틴아메리카 사례를 위주로 연구되었으나, 군부정치를 경험한 아프리카, 중동 지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해당되고 있다. 문민 통제가 가능한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개입과 확전, 정치외교 영역에서 군이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치 개입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피치(J. Samuel Fitch)의 민주적 직업주의 핵심은 군대가 국가 이익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초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Fitch, 1989: 134). 피치의 민주적 직업주의는 군부정치를 경험한 국가들의 군부정치 이후 군 직업주의 특성과 정치 개입 태도 변화와 적응을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펠무터(Amos Perlmutter)는 장교집단에는 내적 응집력을 감독하는

12) 알프레드 스테판의 글은 아모스 펠무터 외. 1985. 『군부정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회 편. 서울: 인간사랑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통제와 규율을 통해 외적 권위의 위계를 만든다고 보았다. 직업군인의 숙련이 관리와 전략을 통해 배타적이고 위계적이며 관료성을 띠게 만든다고 보았다(아모스 펄무터, 1985: 14-35).

군 직업주의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군 직업주의의 유형 및 특징

구 직업주의 Samuel P. Huntington	신 직업주의 Alfred Stepan	민주적 직업주의 Samuel Fitch	조합주의 Amod Perlmut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적안보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 •군부 행동범위: 제한적 •직업적 사회화 영향: 정치적 중립화 •민군관계에 미치는 영향: 비정치화와 문민통치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적안보 •고도로 상호 연관된 정치적 군사적 기술 •군부 행동범위: 무제한적 •직업적 사회화 영향: 군부 정치화 •민군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관리주의와 역할 확장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업주의 공통점: 문민우위 원칙 준수, 헌법과 정당한 법 절차의 강조, 군대의 정치적 역할 배제 •구직업주의 차이점: 군대 충성 대상은 국민(정통성있는 정부에만 복종) •신직업주의 공통점: 대내적 안보에 대한 관심 인정 •신직업주의 차이점: 민주주의체제만 정당성 인정, 안보문제 관여 범위 제한(군대의 책임은 조언으로 국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와 전략에 근거한 근대적 기술 획득 필요성 •보수적 보호자적, 배타적 •관료적이고 조합적인 정향과 관련 하나의 조합체 (corporate body) •직업분야의 내적 통제, 외적인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노력-헌팅턴 객관적 통제 개념 •숙련

* 군 직업주의의 특징을 표로 정리 함

한국군에 대한 직업주의 연구는 국외 여러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군 직업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의 직업주의를 분석한 양병기(1996)는 한국군을 신 직업주의로 분류하면서 1940년대를 형성기로, 1950년대를 분화시기로, 1960년대를 집권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양병기, 1996: 267-287). 양병기(1996)의 연구는 4.19혁명 시기 민간 통제의 차별성에 대한 특징적 요소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5.16군사 쿠데타는 ‘장면 정권 10만

감군계획에 대한 군부의 조합적 이익(한용원, 1993: 39)'을 드러낸 쿠데타인데 이를 신 직업주의적 선택의 문제로 국한되게 하는 한계가 있었다.

(2) 군 직업주의의 정치적 특성

한국과 같이 군부정치를 경험한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문민에 의한 군의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헌팅턴(1957)이 객관적 문민통제 방법으로 제시한 군 직업주의는 민간과 군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군부정치 이후 문민에 의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문민통제 시기의 군 직업주의는 피치(1989)의 민주적 직업주의를 통해 알 수 있다. 민주적 직업주의는 군의 기능을 대내 안보 관여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대외 방위라는 전문 직업 기술 중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론은 절충적 군 직업주의로서 민주화 이행기의 군 직업주의의 특성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단계적 통치 이후 군부가 소극적 정치개입으로 전환되는 직업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민주적 직업주의를 가진 군 장교들은 폭력전문가로서의 자신들의 기술적 전문영역을 통해 전문직업주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군인정신 교육에서 만약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더 위의 상층 계급에 진정하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인 신분을 벗고 입법부 등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과 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며 문민통제에 따를 것을 제시하고 있다(J. Samuel Fitch, 1989: 134).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도 불구하고 군부통치 시기의 군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통치행위에 대한 책임의 인정과 이에 대한 인적, 법적 청산의 문제는 군의 정치개입을 막고 문민통제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기정의가 이루어져야만 군부통치가 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로서의 군은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향후 정치 불개입과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덮고 싶어 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인 국민들에게는 전문적 폭력 관리자로서의 군의 ‘숙련’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군의 반인권적 행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의 원상회복을 통해 바로잡아져야 한다. 이러한 회복 과정의 시작이 진실규명이며 이는 군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 국가범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군부정치 이후 ‘병영으로 복귀(화이너, 1989: 181)’ 한 군은 펄무터(1985)의 사회적 유형처럼 폭력의 관리자로서의 전문성, 후견주의 집단 의식, 관료주의적 조직을 형성하는 조합성, 군부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현실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기본적으로 갖는 정치적 특성이 나타난다.

3. 군 직업주의와 부인

위력기관으로서 과거 군부권력 통치 과정의 반인권 국가범죄 행위에 대한 전환기정의 실현의 문제는 민주주의 이행과정에 수반되어지는 문제들이다. 군부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다룬 진실위원회는 4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¹³⁾. 사실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 처리 문제, 후속조치의 이행 등 세계 각국의 진실위원회 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단계적 차이만 있을 뿐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일부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군은 통치 시기 범죄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전환기정의 과정 군의 부인에 나타나는 직업주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완벽한 군인관’과 후견인으로서의 직업주의적 특성을 들 수 있다¹⁴⁾. 이러한 후견인주의는 문민에 대한 우월주의로 이어지며 자신

¹³⁾ <http://www.tjdbproject.com/> ‘transitional justice database project’ 2019년 5월 23일 검색

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으로 이어진다. 민간에 대한 우월주의는 직업정신을 통해 훈련되고 강화된다. 헌팅턴은 “직업 군인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 및 이해를 조장하기 위한 무력행사를 목표”로 한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전쟁은 인간의 약점을 전제”하고 있으며 “약점은 약점을 찾아 지향 된다”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인간의 약점은 조직, 훈련, 및 지도에 의하여 투쟁에 이길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군사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포나 약점을 극복하도록 인간을 조직’한다는 것이다(Huntington, 2011: 84-85). 이러한 훈련을 받은 직업군인은 인간적 보편성 중 선함과 강함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인간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약함의 극복을 왜곡되게 훈련받을 수 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과 비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군의 민에 대한 우월주의는 또한, 직업적 업무 특성으로 나타난다. 클라우제비츠를 인용한 헌팅턴은 “전쟁이란 적을 강제하여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력행위”라고 언급하며, 전쟁을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 간주할 때 전쟁은 한계가 없다고 보았다(Huntington, 2011[1957]: 84). 군인, 특히 직업군인은 호전성을 가지며 죽음에 익숙한 직업이다. 군인정신은 단체성, 책임성의 의미도 담겨있지만, 전쟁, 안보 등의 상황에 대처하는 특수한 능력에 대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존재하게 된다. 때로는 완벽성이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과 조직운영의 폐쇄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4) ‘여시재’는 “한국군은 ‘완벽’, ‘완전’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각종 정책, 제도에는 ‘완벽한 준비 태세’, ‘완전 작전’ 등의 표현이 빠지지 않는다. 대규모 훈련 취재 말미에 나오는 군인들은 통상 “실전과 같은 완전 작전 성공으로 완벽한 준비 태세를 구비하겠습니다!”라고 외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선상에서, 한국군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군인’을 선발·관리하겠다는 시대에 뒤쳐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https://www.yeosijae.org/posts/582>, 2019년 4월 25일 검색.

자유주의적이고 다원화된 현대의 정치체제에서 군은 가장 ‘현실적인 보수주의 집단’이다(Morris Janowitz, 2017[1960]: 233-255). 김남국(1995)은 “자신이 모든 문제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교육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육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포용적이고 공동체이지 못한 독단적 결정을 우선시 하는 교육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서 종합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단의 의미를 과대 해석하여 법률적 제재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실수를 두려워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는 임기응변 등으로 인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김남국, 1995: 166-167).

둘째, 군은 직업적으로 배타적 숙련성을 갖고 있다. 군부통치 과정에서 저지른 국가 범죄가 밝혀지는 경우 대외 방위 목적의 ‘폭력관리 숙련기술 집단’으로서의 군의 정체성은 국민으로부터 의심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군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지키고자 부인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통제하게 된다. 동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직업 장교단은 내부적 응집력을 갖는다. 외부적으로 통제는 규율을 통해 권위의 위계질서를 갖게 만든다. 숙련은 군 조직의 권위를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전쟁과 관련한 기술과 배타적 폐쇄성은 관료주의적 측면과 함께 사명의식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숙련은 훈련을 통해 전쟁기술의 폭력성 또는 용맹성으로 내적 응집성을 갖게 한다.

배타적 숙련성은 개인이 아닌 단체로 표출될 때에는 법적 규칙에 대한 판단도 흐리게 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을 한번 인정하게 되면 전체로 일반화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직적 차단이 부인이고 이를 위한 집단적 은폐와 조작이 생겨날 수 있다. 직업 군인은 공간적, 관계적으로 사회와 떨어져 생활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직업적 업무와 관련한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으로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고, 개인보다

집단이익을 우선시 한다.

헌팅턴(2011[1957])은 군의 직업적 전문성에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에 주목하면서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협이 없을 때에도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Huntington, 2011[1957]: 92).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에 대해 편중되게 결정하고 바로잡기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잘못에 대한 불인정은 폭력 관리자로서의 군 집단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를 차단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 책임의 확장성이다. 군은 정기적인 진급을 통해 유지되는 조직이며, 조직특성상 진급체제와 업무 책임이 명확하다. 통치과정의 반인권적 행위들은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 명령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범죄 행위를 통해 상위의 권력을 축적하게 된다. 시간의 경과를 과거의 범죄 행위를 바로잡는데 책임을 물어야 할 가해자들의 직책이 높아져 있음을 의미한다. 부인과 함께 범죄행위에 대한 축소와 은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이 경과 될수록 가해자들과 간접적 가해자들을 늘어나게 만든다.

화이너(1989)는 군대가 매우 계층화 되어 있어 ‘등급과 가시적인 계급’에 의해 ‘권위’ 곧 책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계급에 의한 권위와 책임은 군 조직의 진급과 서훈 등이 명확하게 들어나게 된다. 한국은 진급이 ‘군 인사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반인권 행위의 간접 가해자들과 이를 방관했던 책임에 대한 확장성이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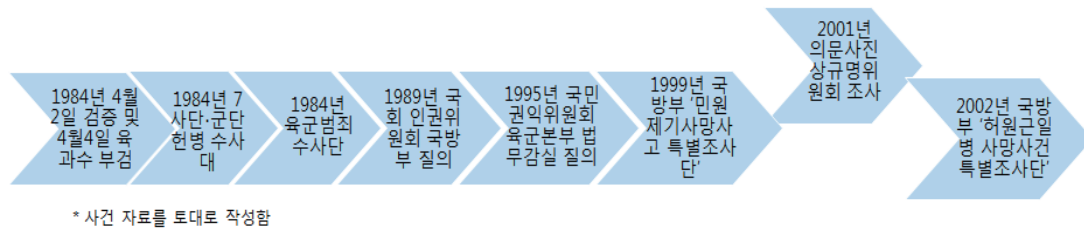
Ⅲ. 군 직업주의와 부인 사례분석

군의 직업주의가 전환기정의 부인과 군 직업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건

은 군이 1984년 4월 2일 허원근 일병이 M16소총 3발을 자신의 폐, 간, 머리에 쏘고 자살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허원근 일병은 15 일간의 정기 휴가를 하루 앞두고 있었고, 중대장 전령으로 차출될 정도로 군복무에 성실했으며, 유서 등 자살이 의심될 어떤 증거들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은 1984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시기였으나 문제인 정부시기인 2017년 군대 내 사망사건 일괄처리 과정을 통해 국가 유공자가 되면서 일단락 지어졌다¹⁵⁾.

과거 군사정권에서 병사는 전쟁수행의 도구였다.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은 한 병사의 죽음이 군 운영과 관련하여 편의적으로 다루어지는 반인권적 과정이었다. 고 허원근 일병에 대한 조사 과정은 군의 부인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고 허원근일병 사망사건 조사 및 부인 과정



(1) 완벽한 군인관과 우월주의

완벽한 군인관의 전문 직업윤리는 조직의 상호 보호와 비밀엄수의 전통과 만나면서 가공의 신화가 유지된다. 즉 처음 군이 발표한 조사가 최상이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 은폐와 조작을 끌어들인다. 특히 군부 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한 직업장교들은 문민에 대한 우월감이 더 높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부인이 일관되게

15) 아직도 유가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타살 발표에 반발하여 2002년 국방부가 허원근사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자살로 공식 부인한 사실을 바로 잡기를 원하고 있다.

진행된다. Matteo, Joost, Carita(2017)의 실험에서처럼 조직 내부자들의 결속과 자신들이 쌓아왔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한다.

2002년 고 허원근일병 사망 사건에서 대해 민관 거버넌스 성격의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총기사고에 의한 타살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방부는 별도의 군 전문 조사인력을 배치,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특별진상 조사단 (이하 특조단)’을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 기존 군의 수사결과인 자살로 발표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은폐, 날조하였다고 부인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타살 조사 결과를 자살로 공식부인 한 것이다.

국방부의 허원근일병 사망조사 특조단은 군이 내부에 임의적으로 만든 조사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이 민간인들을 군부대로 소환하는 등의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하지만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전역한지 20년이 지난 민간인을 국방부로 불러 십여 명이 넘는 군 조사관 및 장교들이 지켜보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고인 진술자들 중 일부는 두려움을 느꼈고, 사건 관련 군 관계자가 경찰을 통해 집으로 찾아오는 등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앞으로 고 허원근 일병사망사건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⁶⁾.

국방부의 특별조사단 정수성 단장¹⁷⁾은 2003년 2기 의문사진상규명

16) 2002년 10월 29일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도자료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조단의 발표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에서 인용하였다.

17) 단장인 정수성 중장은 정규육사 출신이 아닌 갑종 과정을 통해 중장으로 승진한 상징적 인물이었다. 특별조사단장 이후 대장으로 승진 예편하였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안보특보를 거쳐, 2009년 새누리당 경북 경주지역 국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조사책임자 및 조사관들에게 “저번 의문사 위처럼 나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언론에 까발리면 당신네들 다 죽어”라는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기 자료집 Ⅲ권, 2004: 501에서 재인용).

2003년 군대내 사망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 및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에 대하여 국방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 노재홍 단장은 “헌법의 3권 분립원칙을 침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 등 군사법권이 담당하고 있는 “지휘권의 보장, 군사보안의 보장, 상명하복의 엄정한 군 기강 확립의 필요성, 군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군의 생리의 반영 등 군의 특수성에 대한 헌법적 존중”이 특별법 제정으로 헌법적 요소인 군사법권의 특수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천주교인권위원회, 2003: 40에서 재인용¹⁸⁾). 군에 충분한 조사기구와 전문 인력이 있음에도 왜 별도의 군 의문사 조사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이행되고 공고화되는 사회 즉 전환기정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부인은 교묘하고 정치적이다. 집단적 부인이 직업윤리와 연결되면서 군의 부인은 군 특수성 강조를 통한 지휘권의 안정적 확보, 완벽한 군인관의 유지였다. 전환기에 군의 정의 실현은 2005년 윤광웅 장관이 발언한 것처럼 걸림돌 제거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과거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 하였으나, 계파 경쟁에서 밀려 무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게 당선되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20대 국회는 용산참사 과잉진압 책임이 있는 김석기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서 출마하지 못하였다.

18) 2003년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군의문사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토론회에 노재홍 단장이 발표한 지정토론회에서 인용하였다.

의무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권력층 병역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군의문사 문제는 ‘힘없고 뺨 없는 사람들’의 자식들만 군대 간다는 자조적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계급 갈등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군 수사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군 의문사 조사활동은 현재 민간 조사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적 요구에 밀려 군이 변화된 측면이 크다. 처음 군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군이 제시한 반대 논리는 지금도 민간이 요구하는 군의 개혁에 대하여 거부 과정에서 군이 제시되는 반대 논리들이다.

Diethelm and Mckee(2009)의 부인주의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한 군인관과 문민에 대한 우월주의로 인한 부인 관행은 거짓 진술과 논리적 오류를 통해 부인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증언과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대의를 위해 개인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와 연결 된다.

군의 과거 반인권 행위에 대한 부인은 직업윤리인 군의 완벽한 군인관과 우월주의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우월주의는 미군의 작전권 지휘¹⁹⁾로 인한 문민통제의 약화로 이어지며 과거 군의 헌정질서 파괴를 비롯한 반인권 범죄에 대한 완성된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되고 있다.

(2) 배타적 숙련성

19) 한미동맹의 제도화로 이어진 작전권 문제는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지원 등 국방 영역에서 한국군의 군정과 군령 분리라는 이중 지휘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미군이 가진 전시 작전통제권의 지휘범위는 한국군의 부대편성에 대한 ‘사전 지정 결정권’은 물론 작전 통제의 범위로서 정보영역 전체, 작전 영역에서 전투 작전, 전투 편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을 제외하면 한국군이 순수하게 지휘할 수 있는 통제권한들은 인사영역, 작전영역에서의 교육훈련, 행정지원, 군수영역의 자원획득과 소요통제, 예산 정도이다(구본학, 2018: 62-91).

직업주의에서 기인하는 배타적 숙련성은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전체로 일반화 되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생하는 조직적 차단으로 볼 수 있다. 직업 군인은 근무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와 떨어져 생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직업적 업무와 관련한 외부의 지적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1984년 5월 육군 범죄수사단장은 고 허원근 일병 유가족에게 “자살의 경우 총을 2-3발 쏘아 사망하는 사례가 군에서는 자주 취급되고 있음”이라고 민원 회신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사한 사례를 적시하지 않았고 일반화를 통해 자신들이 전문가이니 자신들의 조사 결과가 옳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망사건은 1996년에야 발생하는데 육군 모 부대 소대장 위모 소위가 K2 소총 세 방을 쏘고 자살한 사례였다. 이 사례를 허원근 일병이 자살했다고 하는 증거로 군이 제시하자 199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에 재조사 이첩 결정을 하면서 “망 허원근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위 망 위모는 흉부가 아니고 복부가 먼저 관통된 상태였으므로 동일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음. 사례와 다름”으로 결정통지문을 보냈다.

1984년 5월 20일 육군범죄수사대는 유가족들이 계속 타살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 하자 유가족을 수사대로 불러 “자살이 아니다”라는 증거와 이유를 밝히라고 도리어 책망하며 “사살자나 목격자를 잡아오라”고 위협하였다. 허원근 사망사건은 군에서 7차례의 조사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도 군의 배타적 숙련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군은 자신들이 최초 조사하여 결론내린 결정내용에 대하여 자신들의 직업적 숙련성 관철을 위해 형식적 조사절차만 거쳤다. 무엇보다 총을 다루는 전문성은 군에 있으므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주장한다.

군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애초 자신들이 설정한 자살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부인이 조직의 신뢰를 지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군 의문사 등 사병에 대한 인권 문제 전반으로 확대 되자 은폐 조작 상태의 부인 과정을 밟고 있다.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병대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의 16년간의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육군 범죄수사단과 육군 본부 법무감실 등이 ‘형식적인 재조사만을 거쳐 헌병대와 같은 결론을 유지’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이유는 군의 숙련에 대한 부정당함 이로 인해 군의 전문성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

2003년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당시 군의문사에 대한 의구심과 수사결과 불복 등 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잃은 문제를 지적하자 국방부 토론자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허원근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타살”로 규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전 군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게 함은 물론 군의 사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바 있(천주교인권위원회, 2003: 34)”음을 지적하며 진실에 대한 규명의 중요성과 재발방지 대책 등 원인은 되돌아보지 않고 군 조직 위상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른 위력기관에 비해 내부의 전문 수사 기관인 군 검찰, 군사법원 등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다. 특히 관할관 및 확인 조치권, 심판관 제도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 행위들을 객관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내부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조사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을 윤색하거나 비틀고 논쟁거리를 만든다. 또한 언론을 통해 이러한 정보들을 내보내면서 부인하고 있다²¹⁾.

20) 고 허원근 사망사건에 대한 2015년 9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에서 인용하였다.

21) 조선일보, 2002년8월30일 “허일병 자살 의심할 증거 없어-법의학자 8명 작년 의문사위의 소견 통보”, 월간조선, 2003년 1월호 “분노에 찬 국방부 조사 발표문의 내막추적” “18년만의 재회”등

(3) 책임의 확장성

부인이 지속되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의 확장성을 갖는다. 군은 정기적인 진급을 통해 유지되는 조직이다. 조직특성상 진급체계와 업무 책임이 명확한 편이다. 부인의 반복은 은폐, 조작이 동반되기 때문에 범죄 행위 가담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는 인적 청산 대상자 즉 반인권적 범죄 행위 가담자가 확장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고 허원근 일병 사례에서 책임의 문제는 각 조사 내지 수사 단계에서 부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책임자들의 확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재판부는 선고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제7사단 헌병대에서는 망인의 사인이 자살이란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원고 허영춘은 망인의 사인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하여 온 사실 이에 그 무렵부터 10여 년 동안 육군 제7사단, 제2군단, 1군 사령부의 각 헌병대, 육군 범죄수사단, 육군 본부 법무감실 등 각종 군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를 수 차례에 걸쳐 재조사하였으나 그때마다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사실, 원고 허영춘은 2002년 의문사위가 발족하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군 수사기관과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 조사가 개시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당시 망인이 소속된 부대에서 근무 하였던 광범위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전 군 수사 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한 타살 관련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사실이 인정 된다²²⁾”

22) 2010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 민사부의 ‘고 허원근일병 사망 사건’ 선고 판결문이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고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처음 조사과정에서 타살의 가능성을 은폐하였고, 이후 십 여년의 재조사 기간 동안 군 수사 및 관련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는 이러한 은폐, 부인 과정을 낱낱이 드러내주었다. 만약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부인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조직적으로 큰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드러나는 명확한 사실에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군 인사구조는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8조²³⁾는 정년을 연령, 계급, 근속정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진급 기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반인권적 행위들의 책임의 확장성은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이러한 행위들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서, 반복적인 부인과 은폐, 조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밀그램(2009)이 제시한 행동의 순차성으로 인해 집단적 구속요인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의 확장성은 허원근 사망사건에서 부인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비윤리적 행위 책임에 대하여 인지되는 시점에서 상위의 책임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계산된 행위로 사르트르의 부정직과 연계되어 있다.

23) 『군인사법』 제8조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 중위, 소위: 15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IV. 결론

전환기 정의에 대한 군의 전문직업주의적 관점에서 부인 관행에는 Diethelm and Mckee(2009)의 부인주의자들의 다섯 가지 유형 중 음모적 공모, 거짓 진술과 논리적 오류를 사용한 부인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음모적 공모의 경우 군 정보 접근과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들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군의 폐쇄적 숙련과 민간에 대한 우월주의는 민간영역에서 ‘음모’의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게 하였다. 다음으로 논리적 오류의 문제는 특히 한국군에서 ‘군의 사기 저하’ 등 본질이 아닌 것을 제기하면서 부인하는 것이다. 논리적 오류와 거짓진술은 군 외부의 객관적 환경보다 내부 인들의 강한 연대를 통해 부인의 효과성을 더 높여준다. 군은 공안기구라는 구조적 특성상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은폐하려는 부인주의가 항상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은폐와 부인이 정치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들의 부인에 동참할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약한 증거들의 결함을 강조함으로써 부인할 수 있었다.

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에 대한 전환기정의 부인 관행에서 나타나는 직업주의는 권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완벽한 군인관에서 유래한 문민에 대한 우월주의, 폭력 관리자로서의 배타적 숙련성, 책임의 확장성 등은 군부정치 이후 전환기 정의 과정에서는 군부의 권위적 직업주의²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부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권위적 직업주의로 인해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올바른 해결이 늦어진다면 군은 민간 사회와 점점 더 괴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4) 과거청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업주의적 특성을 ‘권위적 직업주의’로 정의하고자 한다. 권위적이라 함은 어떤 일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하는 행동양식이며, 강압적인 것에 따르고 하위에 오만한 행동의 심리적 형태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특히 주거와 근무지 등이 사회와 분리되어 생활하는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의 의식 괴리는 이해관계의 집단성을 강화하는 ‘조합주의적 직업주의’로 강화 될 수 있다. 이해관계 중심의 조합주의화는 폐쇄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점차 국민감정과 이반 될 수 있다. 이는 의무 복무제에 의해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 하는 많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특히 한국군의 특수성인 미국의 개입에 의한 지휘 체계의 이중성, 이로 인한 문민통제의 약화, 반공주의의 단일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 우려는 군부 정권 가해자들의 부인에 대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 후배들인 육·해·공 전 장병들은 위장 평화와 공산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공조를 수행 해 대한민국 국민·영토·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선택을 결행하라.”라는 2019년 1월 3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발표한 대군(對軍)성명서는 이해 집단으로 전략한 한국군의 모습이기도 하다(출처: 오마이뉴스 김도균기자).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군의 과거청산 부인과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군의 직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민간의 군 조직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방법이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민간이 참여 하는 진상 조사 활동은 폐쇄적 자료 접근과 진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과들이 있었다. 과거사 영역의 일시적 민간 참여가 아니라 군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높여 군의 이해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문민통제 영역인 국방부가 행정부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에 대한 민간 인선이나 적어도 미국과 같이 군대 전역 이후 장관 취임 자격을 민간 신분을 일정기간 거친

사람이 임명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군과 관련한 전환기 정의 사안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국방부의 진실규명 노력이 있어야 하고, 공식적 사과와 재발방지 방법의 제시 등이 필요하다. 특히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한 해당되는 부대의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확보가 중요할 수 있다.

셋째, 반인권적 범죄 행위로 인식되는 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연방군에서 제시하는 ‘내적지휘’ 즉 판단하고 불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의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 외). 독일이 도입한 ‘복종의 원칙’은 군인 개인도 인간이며, 자신의 의지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만약 군인이 타인의 인간 존엄성이나 인권을 해치라는 명령을 받을 때 그에겐 불복종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명령을 하달한 상관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적 지휘’ 개념이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송문호, 2009: 375-396)’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방향 중에서도 특히 신원주의적²⁵⁾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는 한국의 군 관련 전환기정의 과제들이 다시 올바르게 해결되기 위한 정책들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고 부인된 과거 국가범죄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보상, 인권 교육 등을 통한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범죄 행위에 대한 인적, 물적 청산은 잘못된 군의 권위적이고 조합주의적인 군 직업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9.04.30, 논문심사일: 2019.05.21, 게재확정일: 2019.06.13)

25) 이재승(2010)은 『국가범죄』에서 과거청산 유형을 정의모델, 진실화해모델, 혼합모델, 망각모델, 신원모델로 분류하고 한국의 과거청산을 신원주의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원혼을 달래주는 정도의 과거청산 수준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구분학. 2018.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합지휘체계 비교”. *신아세아* 25(1): 62-91.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서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김남국. 1995. 『국민의 군대 그들의 군대』. 서울: 풀빛.
- 김동춘. 2013. 『전쟁정치』. 서울: 도서출판 길.
- 김명희. 2017.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부인(denial)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33(3): 235-278.
- 김현준. 2017. “전환기정의 규범의 확산과 그 효과”. 『한국정치연구』 26(1): 101-126.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서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송문호. 2009. “군형법과 ‘제복 입은 시민’”. 『한국형사법연구』 21(4): 375-396.
- 양병기. 1996. “한국 군부의 직업주의에 대한 재검토: 신직업주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6(1): 267-287.
- 온만금. 2006. 『군대사회학』. 서울: 황금알.
- 이소영. 2013. “기억의 규제와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홀로코스트 부정(Holocaust denial) 규제 법제와 사회적 기억의 구성”. 『법학연구』 21(4): 405-430.
- 이재승. 2010. 『국가범죄』. 서울: 엘피.
- 천주교인권위원회. 2003, 『군의문사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서울: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용원. 1993. 『한국의 군부정치』. 서울: 대왕사.
- 사르트르. 2012. 『존재와 무』. 정소성 옮김. 파주: 동서문화사.
- 스탠리 밀그램. 2009. 『권위에 대한 복종』. 정태연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스탠리 코언. 2009[2001].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조효제 옮김. 파주:

창비.

아모스 펄무터 외. 1985. 『군부정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회 편. 서울: 인간사랑.

아이리스 M. 영. 2018.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 허라금·김양희·천수정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토르스타인 베블런. 2005. 『유한계급론』. 김성균 옮김. 서울: 우물이 있는 집.

허버트 허시. 2009.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강성현 옮김. 서울: 책세상.

C. W. 밀즈 저. 1993[1956]. 『파워엘리트』. 진덕규 역. 서울: 한길사.

S. E. 화이너. 1989[1975]. 『현대정치와 군부』. 김영수 역. 서울: 현암사.

Samuel P. Huntington. 2011[1957]. 『군인과 국가』. 이춘근·허남성·김국현 역.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Diethelm, P. and Mckee. M. 2009. “Denialism: What is it and how should scientists respond?”.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1): 2-4.

Emanuela Fronza. 2018. *Memory and Punishment*. ASSER PRESS.

Fitch, J. Samuel. 1989. “Military Professionalism, National Security and Democracy”. *Pacific Focus IV* 2(Fall1989): 99-147.

Hoofnagle Mark. “The New Scientist Debates Denialism”. <https://scienceblogs.com/denialism> 2010.05.24.

Janowitz, Morris. 2017[1960]. *The Professional Soldier*. New York: Free Press.

Keith Kahn-Harris. “Denialism: what drives people to reject the truth”.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8/aug/03/> 2018.08.

Matteo Fuolia and Joost van de Weijerb and Carita Paradisb. 2017. “Denial outperforms apology in repairing organizational trust despite strong evidence of guilt”. *Public Relations Review* 43: 645-660.

Ruti G. Teitel. 2003.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6: 69-94.

더 읽을 자료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재판 기록.

중앙일보. “직격 인터뷰 김영희 묻고 에펠만 전 동독 국방장관 답하다-베를린 장벽 붕괴 때 군 사령관이 탱크 출동 명령 거부”. 2019.01.14.

오마이뉴스. “항명 선동하는 노병들..존경받는 군인을 보고 싶다”. 2019.02.20.

사이트 <http://www.tjdbproject.com/>

블로그 <https://www.yeosijae.org/>

<Abstract>

The Military's Denialism to Clean Up the Past and Professionalism

Hyung Sook Lee*

The study is an analysis of the military's practice of denying crimes against humanity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activism. Military Professionalism has been studied as a way to strengthen civil control over the military. Military Professionalism has a valid aspect with the military's process of seizing political power and the theory of analyzing military collective action after “returning to barracks.” In the process of defin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military expresses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superiorism by perfect military officers,” “battlesive proficiency” caused by a closed structure, and “expansion of responsibility” for past state violence acts. The study analyzes three military professional traits as examples: the death of Private Heo Won-geun. South Korea is a security-oriented divided nation. The importance of security has resulted in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the military among state organizations, and military vocationalism has led to the combined nature of the military gradually becoming understood by the military in this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As an alternative to the military's combinatorial activism in

* Sungkonghoe University, Sociology.

anti-human rights activities, active civilian involvement in military organizations, formal apology from the Defense Ministry for past military-related state crimes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and the introduction of “internal command,” or “principles of obedience,” presented by the German Federal Army.

Key words: denialism, Military Professionalism, transitional justice, Suspicious Death, public security apparatus